

의안번호	2212993
의 퇴 인	강명구 의원
회 답 일	2025. 9. 24.
추 계 번 호	25F503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
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1.3억원, 2031년 1.3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6.3억원(연평균 1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60조제2항)	-1.3	-1.3	-1.3	-1.3	-1.3	-6.3	-1.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0조제2항 (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- 수혜내용: 공장의 대지·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 → (개정안) 2030.12.31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0조제2항 (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
 -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는 2026~2030년에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되며,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발생
-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년~2025년 실적(매년 1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대도시 밖 공장 이전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평균 감면실적은 최근 5년('21~'25년) 중 특이치인 2021년(0.1억원)을 제외하면 1.3억원 수준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대도시권 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의 대지·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, 5년 분할 익금산입 과세특례 적용

- 대도시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(기장군 제외), 대구광역시(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)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
 - 단, 위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제외함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
□ (감면실적)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2021년 0.1억 원, 2025년 (잠정치) 1억 원

[표 2] 대도시 밖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실적: 법인세, 2021~2025년

(단위: 억 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p
법인세	0.1	1	2	1	1

주: p는 잠정실적

자료: 대한민국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신고연도

나. 추계방법

- 2021년 실적을 특이치로 간주하여 제외하고, 2022년~2025년(잠정)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세수효과 추계
 - 최근 4년(2022~2025년) 평균 감면액: 1.3억원
 -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(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/5년거치 5년 분할납부)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

다. 추계결과

-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1.3억원, 2031년 1.3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6.3억원(연평균 1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60조제2항)	-1.3	-1.3	-1.3	-1.3	-1.3	-6.3	-1.3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